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4. 12 선고 2022가단649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드보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2021. 5.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532,81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32,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2799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9. ‘C은 원고에게 3,090,084원 및 그 중 939,059원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022. 10. 4. 기준으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6,532,819원이다.

나. 피고의 상속등기 등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F과 자녀들인 피고, G, H, I, C과 자녀 J(1987. 6. 3. 사망)의 상속인들인 K, L, M이 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5. 17.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5. 25.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2021. 5.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경료

피고는 2022. 11. 3. 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N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점에 관한 판단

어느 시점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질 때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표준으로 하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2021. 5.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피고와 C 등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하여 작성한 유일한 처분문서인 점, ②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0. 4.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도록 정한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것인 점, ③ 피고는 실제로는 망인이 사망한 2010. 4. 14. 상속재산분할협정이 이루어졌고, 다만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2021. 5. 17.자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2021. 5. 17. 피고와 C 등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부터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C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1/15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장남으로서 망인을 부양하였고 C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C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C은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또한 C이 무자력인 사정을 알지 못하여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C의 재산상태나 C과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1).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N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로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5 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2년도 공시가액이 합계 77,729,400원[= 63,525,000원(= 38,500원 × 1,650㎡) + 14,204,400원(= 35,600원 × 39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2/15 지분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10,363,920원(= 77,729,400원 × 2/15)이 되고, 이는 원고가 구하는 2022. 10. 4. 기준 C에 대한 채권액 6,532,819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6,532,81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532,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별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